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780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7800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8 선고 2019가소5492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판결선고 2020. 4. 22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7. 18. 선고 2019가소54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5. C에게 원고 소유인 광주시 D 상가건물 1층 일부 및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임대하였고, C는 이 사건 상가에 'E'라는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등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10.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2015. 11. 2. C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상호를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 시설(집기류, 주방용품, 간판, 인테리어 등 모든 물품 일체)을 인수하고, 2016. 1. 30.까지 인수비용 2,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5. 11. 2.자로 근무하는 현재 직원들(F, 이의 임금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1. 14. 이 사건 상가에서 '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식당을 개업하였다가 2016. 1. 19. 폐업하였는데, 개업과정에서 2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위 식당의 간판을 새로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설치하였던 시설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무단으로 떼어갔고, 때문에 원고는 2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새로운 간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간판의 설치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 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에게 2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시설물에 '간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 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원고가 2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상가에 새 로운 간판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 및 갑 제7, 9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간판 을 무단으로 떼어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내이라는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면서 기존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간판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인 F에게 그 작업을 지시하였다.

② F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19019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 고의 지시에 의해 갑오징어 메뉴판 및 시트지(갑오징어 간판 사진)를 철거하였다.

이 사건 간판은 골조를 그대로 두고 천갈이만 한 것이다.

갑오징어 글씨가 써져 있는 플래카드는 쓸모가 없고,원고가 뜯어다가 폐기하라고 해서 내가 피고 집

앞에 두었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도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또이 가지온 것은 간판이 아니고 음식 그림이었다.

F이 쓰레기장에 그것을 버리고 갔는데 직원이 발 견해서 쓸 것만 고쳐서 부착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도 뒤에 방치되어 있다. '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은 사실과 진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간판을 무단으로 떼어 가졌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 스스로 비용을 투자하여 간판을 새로교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근판사 강정연판사 김회근